

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9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. 4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『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』 일부 개정

2. 주요내용

-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 : 경상남도 세정과-12080(2009.10.06)호 관련임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(증명) 6.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(2)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				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(증명)				(증명)			
6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	6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
(1) 세목별 과세증명	1통	800원		(1) 세목별 과세증명	1통	800원	
(2) 납세증명서	1통	800원		(2) 납세증명서			삭제